

국·회·토·론·회

#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 일 시 : 7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 CONTENTS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i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ii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iv

## 환영사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	v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	vi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	vii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	viii

## 발 제

1.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	1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	19
김명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 토 론

1. 김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	41
2. 이윤경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	47
3. 강이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	57
4.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	59
5.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61



##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오늘 본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신현영 의원님과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찌보면 너무나 큰 거대담론적인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고전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을 육체적인 체벌을 통해 훈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훈육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왔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만큼, 이러한 고전적인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보편타당한 명제가 훈육이라는 비명아래 정당화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게 되고, 이는 아동학대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체벌을 근절하는 실험을 통해, 비폭력적인 교육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편타당한 인권적 실험을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까지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완전한 근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입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주민, 양의원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실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염병과 학대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하였고, 오늘 이렇게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 부모의 과도한 체벌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계모가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조사에서 계모는 ‘훈육차원’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입니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징계권은 부모의 체벌을 용인하는 오인의 여지가 있고, 심각한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민법 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훈육을 핑계로 자녀체벌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심각한 체벌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없도록 민법 915조는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민법915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법상 부모징계권 상제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과,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관련 해외 입법례를 통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실제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김명수 전문경력관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재원 교수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이윤경 센터장님,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님,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님,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민법 915조 징계권과 같이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21대 국회 차원에서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양의원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얼마 전 여행가방에 아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여덟, 아홉 살배기 애들을 발가벗겨 산속에 방치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모두 부모들이 훈육과 징계를 이유로 시작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폭력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숨겨진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를 통계로 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식이 점차 성장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권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대하는 관습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민법 915조는 친권자에게 자녀 징계권을 인정해 민형사상 면책항변사유로 악용돼 왔고, 현재도 법정에서 변론사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법 915조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과도 상충돼 왔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등 인류 가치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징계권 삭제는 우리 사회가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라 여깁니다.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정부 입법을 예고 중입니다. 저도 징계권 삭제와 함께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쟁점은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훈육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개정취지를 반감시키는데 있습니다. 만약 훈육조항을 새로 두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십수년 간 관련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한 책임에서 입법부도 벗어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회 입법 과정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가자들께서도 소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환영사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굿네이버스 김웅철 사무총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이렇게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 서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국회의 원님, 신현영 국회의원님, 양의원영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Change 915’ 캠페인을 통해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 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체벌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학대와 체벌을 용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은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958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는 학대와 체벌 근절을 위한 첫걸음임과 동시에 아동권리가 보장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환영사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법안의 발의와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 신현영 국회의원님과 양이원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시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인권, 장애인권, 사회적경제를 주된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설립 이후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해 왔으며, 특히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가정에서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며, 협약의 당사국에게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모멸적인 형식의 벌들을 금지하고 철폐하도록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랑의 때’라는 이름으로 체벌에 관대한 편으로,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과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간접 체벌이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인식을 변화하고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는 그 시작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회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강정은 변호사님, 김명수 전문경력관님, 김재원 교수님, 이윤경 센터장님, 조신행 과장님, 김민지 사무관님, 박병수 과장님과, 토론회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정태영입니다.

먼저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박주민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5,6차 국가 심의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법」 제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서 기인한 경우라면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결코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아동이라고 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동에게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식과 가치관을 전달해야 하는 훈육은 체벌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토론회는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묵과해 왔던 아동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정을 비롯해 아동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체벌금지 법제화는 실질적인 체벌 근절의 큰 도약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논하는 오늘 이 자리는 아동의 권리를 보다 증진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있는 걸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환영사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입니다.

먼저, 민법 915조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 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최근 훈육을 빌미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어린 자녀를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자녀는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귀중한 생명권을 보장 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인식부터 철저히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출발점으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5, 6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의 법률 및 관행이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요청에 우리 사회는 하루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법률이 아동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아동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들을 나누고 실천의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발제 1

#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 부모의 권한에서 아동의 권리로 -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sup>1)</sup> 변호사

## 1. 민법 징계권 개정 배경

*“부모의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받은 질문이다. 질문을 달리 생각해보자. “교사의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어떨까. 교사의 체벌도 부모의 체벌과 같이 논쟁적으로 다루어졌을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과연 이 질문을 아동<sup>2)</sup>에게도 하고 있는 지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 여론에 아동은 보이지 않는다.

‘가정은 특별하다’는 환상을 깨야 한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sup>3)</sup>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6.9%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이다. 오히려 흔히 ‘선생님’이라 불리는 보육 교직원, 유치원 및 학교 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9%에 이를 뿐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체벌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체벌은 존재해왔다. 아동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동이 잘 되라고, 아동을 위해서,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본질이 ‘폭력’이라는 점은 같다. 이때 아동의 목소리는 ‘부모가 다 너 잘 되라고, 부모가 설마, 너가 잘못해서 그런거지’ 라는 이유로 묵살되곤 한다. 아동 인권을 옹호하는 현장단체는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 법제화를 외쳐왔지만, 정부부처는 무응답,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민법」(이하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1958. 제정 당시 모습 그대로 존속해왔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도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징계권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2019. 5.이 되어서야 관계부처합동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움직임에 힘입어 2019. 9. 국회에서는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체벌 금지 법제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sup>4)</sup> 하

1)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 www.duroo.org  
2) 이 글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 소년, 연소자, 자녀 등으로 불리는 사람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3면.

지만 이때에도 정부는 민법의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징계권의 범위에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9.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결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indirect corporal punishment)’ 및 ‘훈육적 처벌(disciplinary punishment)’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밝혔다. 2011. 제3-4차 심의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8년 넘게 적극 대응한 귀한 결과이다.

2019. 11. 19.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Change 915’ 캠페인을 통해 받은 32,000명의 서명과 109개의 연명단체 목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했다.<sup>5)</sup> 이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받은 장관은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법 제 915조 징계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2020. 4. 23.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 결정사항은 1) 민법 제915조 삭제, 2) 필요한 훈육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민법 제915조 전단 ‘필요한 징계’ 부분은 ‘필요한 훈육’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민법 제913조에 추가하는 방안 채택), 3) 체벌 금지에 관한 규정 추가이다.

2020. 6. 10. 법무부는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사건이 여럿 발생한 직후, “민법상 체벌 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을 제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0. 6. 12.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해 정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0. 6. 10.자 보도자료 참조).

제20대(2016.-2020.), 제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징계권 개정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천정배의원 대표발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한다. 다만,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규정에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 법제화를 다양한 형태로 담기도 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징계권의 내용을 조항의 위치를 달리해 제914조(거소지정권)로 옮기는 안도 있다.

4) 공동주최: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5) <https://www.change915.org/>

[민법 징계권 개정 국회 발의 현황(2020. 7. 19. 기준)]

국회	발의자(의안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20대	천정배의원 (14273)	2018. 7. 6.	제915조(징계권)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범위에는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대	신현영의원 (344)	2020. 6. 11.	제915조(징계권) 삭제
	전용기의의원 (381)	2020. 6. 11.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15조(징계권) 삭제
	항보승희의원 (427)	2020. 6. 12.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단서 신설: 권리의무가 있으며, 자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 ---. 다만, 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14조(거소지정권) 단서 신설: 다만, 친권자는 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5조(징계권) 삭제
	양의원영의원 (1269)	2020. 7. 1.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2항 신설: ② <u>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15조 삭제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징계' 문구 삭제

2. 체벌 금지 관련 현행 법제 현황

가. 국내법제 현황

1)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0조, 제12조 등).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민법상 징계권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 제1항).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이기도 하다.<sup>6)</sup>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사건<sup>7)</sup>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 설치 금지사건<sup>8)</sup>에서 “아동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보호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

6)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결정.  
7)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8)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판시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의 수업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사건<sup>9)</sup>에서도 “학생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인했다.<sup>10)</sup>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2)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민법은 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으로 제915조(징계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체벌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 모두 이견이 없다.”는 해석도 있다.<sup>11)</sup> 징계권은 친권대행자(제910조), 미성년후견인(제945조)도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징계’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의2).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와 제914조(거소지정권)도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동에 대한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up>12)</sup>는 매년 국가별 체벌 금지 법제화 현황보고서를 발

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판결.

10) 정기상·오서현, 아동보호법론, 유로(2019), 26-27면.

11) 주석형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11.), 569면.

12) www.endcorporalpunishment.org

표한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민법 징계권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차별이 금지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sup>13)</sup>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이 친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2011년 개정되었지만 제915조(징계권) 조항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이 조항(민법 제915조)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며, 1958년 제정된 민법은 아동복지법상 학대를 ‘심한 정도의’ 차별에만 축소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 3) 아동복지법상 차별 금지 규정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은 선언적 규정으로서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에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자’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해 그 범위가 넓다.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이 조항은 2015. 3. 2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차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것’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다만, 위 조항의 최초 제안 내용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 신설하는 형태로 “⑤ 아동은 가정 안에서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sup>14)</sup> 그런데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체계상 차별 금지는 보호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정신적 고통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면서,<sup>15)</sup> 다른 개정법률안<sup>16)</sup>을 통합한 대안<sup>17)</sup>이 가결되었고, 현행 조문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입법의도와 달리,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p><b>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b>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5. 3. 27.&gt;</p> <p>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3. 27.&gt;</p>
---

13) <https://www.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country-reports/RepublicOfKorea.pdf>

14) 의안번호 9694,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5)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2015. 2.)

16) 의안번호 9587

17) 의안번호 14133

#### 4) 아동학대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제3조, 제17조, 제71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및 제4호 등).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5) 소결

여전히 차별 금지 법제화에 대한 과제가 존재한다. 보호자가 민법상 징계권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등의 책무규정을 위반해 징계 혹은 체벌을 할 경우,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제재할 명시적인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 국제인권규범 현황

우선, 1991. 1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1. ‘가족과 학교 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 토론의 날에 채택한 권고(CRC/C/111), 2006.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채택된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7. 채택한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CRC/C/GC/8) 등을 들 수 있다(이하 4.항에서 자세히 검토).

유엔아동권리협약 외에도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인 인권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고문방지위원회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의 차별 철폐 요구하고 있다.<sup>18)</sup>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동 차별이 여전히 가정, 학교 및 어린이집, 아동시설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환경에서 명백히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개정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CAT/C/KOR/CO/3-5, paras.33-34.).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차별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및 양 규약의 전문에 규정된 국제인권법의 인권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E/C.12/1999/10).<sup>19)</sup>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차별 금지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18) 장민영,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체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분석 및 국내법 검토”, 중앙법학회(2013), 13-17면.

19)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1999) 일반논평 제13호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E/C.12/1999/10.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를 직접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금지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 교육, 훈계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처벌을 포함하는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엔 국제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사회권위원회, 미주인권법원 및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들도 부모나 교육기관의 훈육적 목적이 체벌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체벌은 제한 없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sup>20)</sup>

### 3. 체벌 관련 판례의 검토

징계권이 규정된 민법은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sup>21)</sup>이다. 따라서 징계 내지 체벌이 ‘범죄’에 해당되는 지 문제될 경우,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민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다. 대신 민법상 징계권은 판례에서 ‘훈육’의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하게 된다. 보통 학대범죄를 저지른 학대행위자(가해자)는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필요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체벌 금지 조항 또한 그 위반을 제재하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가. 징계(훈육) 목적을 고려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sup>22)</sup>

##### 1) 정당행위로서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친권자의 학대행위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훈육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서 학대 등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다. 판례는 학대 등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될 것(목적의 정당성), ②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것(대체 수단의 활용가능성), ③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체벌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400 판결(확정) 등 참조].

20) 이노홍, “아동의 권리와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31-132면.

21) 민법주해(1)-총칙(1), 광윤직, 박영사(1992), 29면.

22)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류혜정·표슬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의 “체벌 금지 법제화 관련 민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검토” 의견서(2019. 6.)를 보완한 것이다.

## 2) 훈육의 목적에 따라 학대의 요건 부정

법원은 체벌이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경우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서산지원 2016고합70 판결).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보호자(계부)는 피해자(당시 8세)가 차량 내부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체를 건너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으며, 시험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책상 모서리에 눈 아래를 찌어 멍이 들게 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될 수 없고 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학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 365 판결, 확정됨).

## 3) 훈육의 의도가 학대범죄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

심지어, 훈육의 의도로 체벌한 사정이 학대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1592 판결). 피고인인 부가 별거 중인 처와 동거 중인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리게 되었던 점, (중략),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체벌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노415 판결).

### 나. 징계권 행사의 한계

드물지만, 「형법」상 협박죄를 판단하면서 민법상 징계권을 고려한 판례가 있다. 친권자인 아버지가 딸인 피해자(3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징계권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

결). 참조조문으로 「형법」 제283조와 함께 민법 제913조와 제915조를 제시하였다. 징계권 행사의 목적,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해 과도한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정도가 심한 때에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sup>23)</sup>

#### 4.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필요한 훈육”의 문제점

현재 발의된 개정법률안 중에는 민법 제915조(징계권) 규정은 삭제하되,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신설하는 안이 존재한다. 또한 2020. 3.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역시 “필요한 훈육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권고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훈육적’ 형태의 체벌·폭력·처벌을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적당한’ 또는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규정도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 제913조에 추가한 ‘필요한’이라는 신설 문구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12. 20. 대한민국 가입·비준)

제19조는 ‘부모·후견인 기타 양육자의 양육을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폭력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대 또는 착취, 성적학대”로 정의하고 있다(제19조). 제37조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

##### 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요청하였다.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23) 주해친족법 제2권, 윤진수 등, 박영사(2015), 1053면 참조.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c) Explicit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law and in practice, in all settings and in all areas of the State party;

### 나-1. 2019. 2.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쟁점목록(CRC/C/KOR/Q/5-6)

7. 간접체벌, 징계를 포함한 체벌근절 및 행위자(가해자) 제재를 위한 당사국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8. 연령, 성, 인종, 국적, 지리적 위치 및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상황으로 분류된 지난 3년간의 최신 통계자료를 제시하시오

(a) 간접체벌과 징계,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성학대(교사에 의한 경우 포함)와 같은 모든 형태의 체벌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사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당사국에서 신고된 형

정부는 위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청한 쟁점목록 질의에 대해 2019. 5. ‘포용국가아동정책’을 언급하면서 징계권의 범위에 체벌을 제외하는 등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하였다.

### 나-2. 2019. 9.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질의와 정부 답변 내용

본 심의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체벌이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랜 전통에 따라 ‘징계’라는 이름으로 훈육 목적으로 부모가 체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동시에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으나,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을 개정하지 않고 용어를 순화하거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위의 쟁점목록 질의 답변과 동일하게 답했다.

1) 아말 알도세리 위원 질의 (체벌 전반 관련):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까? ...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출이 되었던 세 차례 보고서에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했고 또한 2012년 UPR(보편적인권정례검토)에서도 권고를 했고 이에 대해 수용하셨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고서의 77항에 따르면 체벌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금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다른 환경에서는 금지되었습니까? 특히 가정 내, 또는 대안적인 보육 환경에서 금지되었습니까? 학교 행정 측에서는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결정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경영 측이 이러한 체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간접적 방법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완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되고 있는 것인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간접적인 체벌까지 모두 금지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어린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체벌이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집에서의 체벌을 강조하였는데요. 아동들은 부모님이 더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또 체벌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2) 필립 자페 위원 질의 (민법 징계권 관련):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의,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오랜 전통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이른바 한국에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만연해있고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하나의 만연화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와 관련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견 수렴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지 그 기한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통해 체벌에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민법 특히 915조를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민법 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의 복리를 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징계권의 용어를 순화하거나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CRC/C/GC/8)

① 협약 제5조가 규정하는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에 훈육의 굴욕적인 형태를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며(para.28.), ② 본 위원회는 많은 국가의 민법 등에 아동 훈육 관련 규정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족 등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도의 폭력(‘적당한’ 혹은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제정법 혹은 판례법 포함)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para.31.). ③ 아동에 대한 폭력이 ‘훈육’이나 ‘합리적 교정’으로 불리는 것에 관계없이 금지되어야 한다(para.34.). ④ 신체적 처벌에 대한 전통적인 용인을 고려해볼 때, 적용 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족법, 모든 형태의 대안 양육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등)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해야 하며(para.35.), ⑤ 민법이나 가족법에 모든 신체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규정은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들이 형사 소추당한 때에 더 이상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합리적’이거나 ‘알맞은’)라는 어떠한 전통적인 변호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가족법 또한 부모의 책임에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 없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para.39.). 이하,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제5조는 당사국이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능력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할” 부모의 책임,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도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해석은 협약 전체와 일치해야하며,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기타의 잔혹한 혹은 훈육의 굴욕적인 형태를 정당화하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28. Article 5 requires States to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Here again, interpretation of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must be consistent with the whole

Convention and leaves no room for justification of violent or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discipline.)

“31.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는 많은 국가의 형법 및/혹은 민법(가족법)에 부모와 기타의 양육자에게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주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합리적인” 혹은 “적당한” 응징이나 교정에 대한 옹호는 몇 세기 동안 영국 보통법의 일부로, 프랑스법에서는 “교정의 권리”로 자리잡아왔다.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같은 옹호가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징벌과 노예, 하인, 도제에 대한 주인의 응징의 정당화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이 가정/가족 혹은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어떤 정도의 폭력(그 예로 “적당한” 혹은 “알맞은”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제정법 혹은 판례법)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1. In its examination of reports, the Committee has noted that in many States there are explicit legal provisions in criminal and/or civil (family) codes that provide parents and other carers with a defence or justification for using some degree of violence in “disciplining” children. For example, the defence of “lawful”, “reasonable” or “moderate” chastisement or correction has formed part of English common law for centuries, as has a “right of correction” in French law. At one time in many States the same defence was also available to justify the chastisement of wives by their husbands and of slaves, servants and apprentices by their masters.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the Convention requires the removal of any provisions (in statute or common – case law) that allow some degree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e.g. “reasonable” or “moderate” chastisement or correction), in their homes/families or in any other setting.)

34. 아동에 대한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관한 전통적인 용인에 있어서 점점 많은 수의 국가가 신체적 처벌의 허용 및 현재의 옹호규정의 단순한 폐지로는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 혹은 형법에서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는 성인에게 하듯이 아동을 때리거나 “철썩 때리거나”, “찰싹 때리는 것”이 불법이며, 폭력에 관한 형법이 아동에 대한 상기 폭력이 훈육이나 합리적 교정으로 불리는 것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됨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34. In the light of the traditional acceptance of violent and humiliating forms of punishment of children, a growing number of States have recognized that simply repealing authoriza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any existing defences is not enough. In addition, explicit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in their civil or criminal legisl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it is as unlawful to hit or “smack” or “spank” a child as to do so to an adult, and that the criminal law on assault does apply equally to such violenc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ermed “discipline” or “reasonable correction”).

35. 일단 아동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형법이 완전히 적용되면,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범죄자가 누구이든 간에 신체적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입장은 신체적 처벌에 대한 전통적인 용인을 고려해 볼 때, 적용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족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 양육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고용법-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만약 전문가 윤리강령 및 교사, 양육자, 기타 사람들에 대한 지침, 그리고 또한 시설의 규칙이나 설립 문서가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불법성을 강조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35. Once the criminal law applies fully to assaults on children, the child is protected from corporal punishment wherever he or she is and whoever the perpetrator is. But in the view of the Committee, given the traditional acceptance of corporal punishment, it is essential that the applicable sectoral legislation – e.g. family law, education law, law relating to all forms of

alternative care and justice systems, employment law – clearly prohibits its use in the relevant settings. In addition, it is valuable if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and guidance for teachers, carers and others, and also the rules or charters of institutions, emphasize the illegality of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39. 모든 신체적 처벌의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를 달성하는 것은 다양한 당사국들에서 다양한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 소년 사법 및 대안 양육의 모든 형태를 담당하는 법률의 특정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형법 규정이 가족 내를 포함한 모든 신체적 처벌에 적용됨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당사국의 형법에 추가적인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가족법에 모든 신체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규정은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들이 그들이 형사소추 당한 때에 더 이상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합리적’이거나 ‘알맞은’)라는 어떠한 전통적인 변호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가족법 또한 부모의 책임에는 아동에게 여하한 형태의 폭력 없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한다.

(39. Achieving a clear and unconditional prohibition of all corporal punishment will require varying legal reforms in different States parties. It may require specific provisions in sectoral laws covering education, juvenile justice and all forms of alternative care. But it should be made explicitly clear that the criminal law provisions on assault also cover all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in the family. This may require an additional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of the State party. But it is also possible to include a provision in the civil code or family law, prohibiting the use of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ll corporal punishment. Such a provision emphasizes that parents or other caretakers can no longer use any traditional defence that it is their right (“reasonably” or “moderately”) to use corporal punishment if they face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code. Family law should also positively emphasize that parental responsibility includes providing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to children without any form of violence.)

라. 200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족과 학교 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 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CRC/C/1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약한 강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훈육적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CRC/C/111, para 715.).

715. 위원회는 당사국에 시급한 문제로써, 협약의 규정 중 특히 제19조, 제28조, 제37조(a) ... 에 의해 요구된 것과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아무리 약한 강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폭력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15.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as a matter of urgency, to enact or repeal their legislation as necessary in order to prohibit all forms of violence, however slight, within the family and in schools, including as a form of discipline, as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articles 19, 28 and 37 (a) and taking into account articles 2, 3, 6 and 12, as well as articles 4, 5, 9, 18, 24, 27, 29 and 39.)

마. 2006.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채택된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보고서(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유엔아동폭력보고서는 2002. 유엔총회 결의문에 연구가 제안되어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전문가(Dr. Paulo Sergio Pinheiro)가 3년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관한 심층연구를 한 결과이다. 독립전문가는 가정 내 폭력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체벌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로 이어짐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41.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폭력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발생하고, 신체적, 모욕을 주는 체벌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체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고서에 기록되고 연구 지역자문협의회에서 발언하였던 아동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체벌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아 괴로웠으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제안하였다.

(41.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amily may frequently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discipline and takes the form of physical, cruel or humiliating punishment. Harsh treatment and punishment in the family are common in both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Children, as reported in studies and speaking for themselves during the Study’s regional consultations, highlighte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urt they suffer as a result of these forms of treatment and proposed positive and effective alternative forms of discipline.)

42. 신체적 폭력은 종종 심리적 폭력을 동반한다. 모욕, 헐뜯, 격리, 거절, 위협, 정서적 무관심 등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성장을 해치는 폭력의 형태이다. 특히 부모와 같은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그렇다.

(42. Physical violence is often accompanied by psychological violence. Insults, name-calling, isolation, rejection, threats, emotional indifference and belittling are all forms of violence that can be detrimental to a child’s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well-being — especially when it comes from a respected adult such as a parent.)

## 5. 징계권 개정방향: ‘부모의 권한’에서 ‘아동의 권리’로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징계권을 삭제하려는 입법취지는 징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필요한 훈육”으로 대체하여 아동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징계권 삭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로 규율해도 충분하다.<sup>24)</sup>

24) “친권자의 징계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도 보호·교양을 위하여 불가피·부득이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한 질책이나 체벌은 제913조에 기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의 실현방법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2015), 1051면].

제915조(징계권) 후단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또한 삭제되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실제 현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모가 자녀를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913조가 정하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또는 제914조의 거소지정권, 「소년법」 등 다른 법률이 충분히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등이 소년부(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통고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제3조)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sup>25)</sup>

최근 훈육을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다가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다수의 아동보호·아동학대사건에서 학대행위자(가해자)가 하는 주장에는 ‘훈육’이 등장한다. 법원은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징계 내지 훈육의 의도와 목적을 정당행위로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정, 혹은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학대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동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당한’ 또는 ‘알맞은’, ‘필요한’ 응징이나 교정)을 허용·정당화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위해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대상 내지 객체라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권리, 징계(체벌)할 권리란 없다. 부모 등 양육자(보호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이행의무자일 뿐, 권한행사자가 아니다. 이러한 보호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람이다. 이미 민법 또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제1항).

비아동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아동 또한 차별과 배제 없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은 경제·사회·심리·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성인보다 더 쉽게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아동은 잠재성(진화하는 능력; Evolving Capacity)이 있는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이기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아동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증명하기 위해 징계·훈육권이라는 견고한 벽을 깨도록 강요받는다. 징계권 삭제는 부모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복된 요청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행

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권해, 리야드 가이드라인(A/RES/45/1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 ‘소년사법 내의 아동권리’ -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 철폐 권고 등 우범소년 규정 삭제는 국제인권규범의 반복된 요청이다.

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관련 사건<sup>26)</sup>에서 “그동안 아동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급히 처벌 강화, 전담 인력과 예산 증원 등 사후적으로 취하는 조치만으로는 학대를 온전히 근절할 수 없다. 아동학대시스템에 대한 조직적 진단, 정비와 함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겠다는 ‘아동권리 관점’의 선언, 선제적으로 폭력을 ‘예방’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징계권 삭제가 그 해답이다.

---

26)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발제 2

#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김 명 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



#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 사회적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김명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일본              |
| II.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현황  | 3. 뉴질랜드            |
| 1.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4. 소결              |
| 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IV. 맺음말            |
| 3. 관련 국내법과 현행 「민법」 규정의 문제점 | 1. 사회전체의 인식 전환이 우선 |
| III. 비교법적 검토               | 2. 입법 방향           |
| 1. 독일                      |                    |

## I. 머리말

최근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건(아동학대치사상)이 자주 발생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sup>1)</sup>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부모의 징계권에 체벌이 허용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고 부모의 체벌은 가정 내 훈육의 일종으로서 ‘사랑의 매’라고 여겨 국가로부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치사상 사건(2020년 5월 창녕 아동학대사건, 같은 해 6월 천안 아동학대사건 등)의 경우에 해당 부모는 ‘훈육’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을 징계했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이미 60여개 국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아래 그림 참조),<sup>2)</sup>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sup>3)</sup>에서도 아동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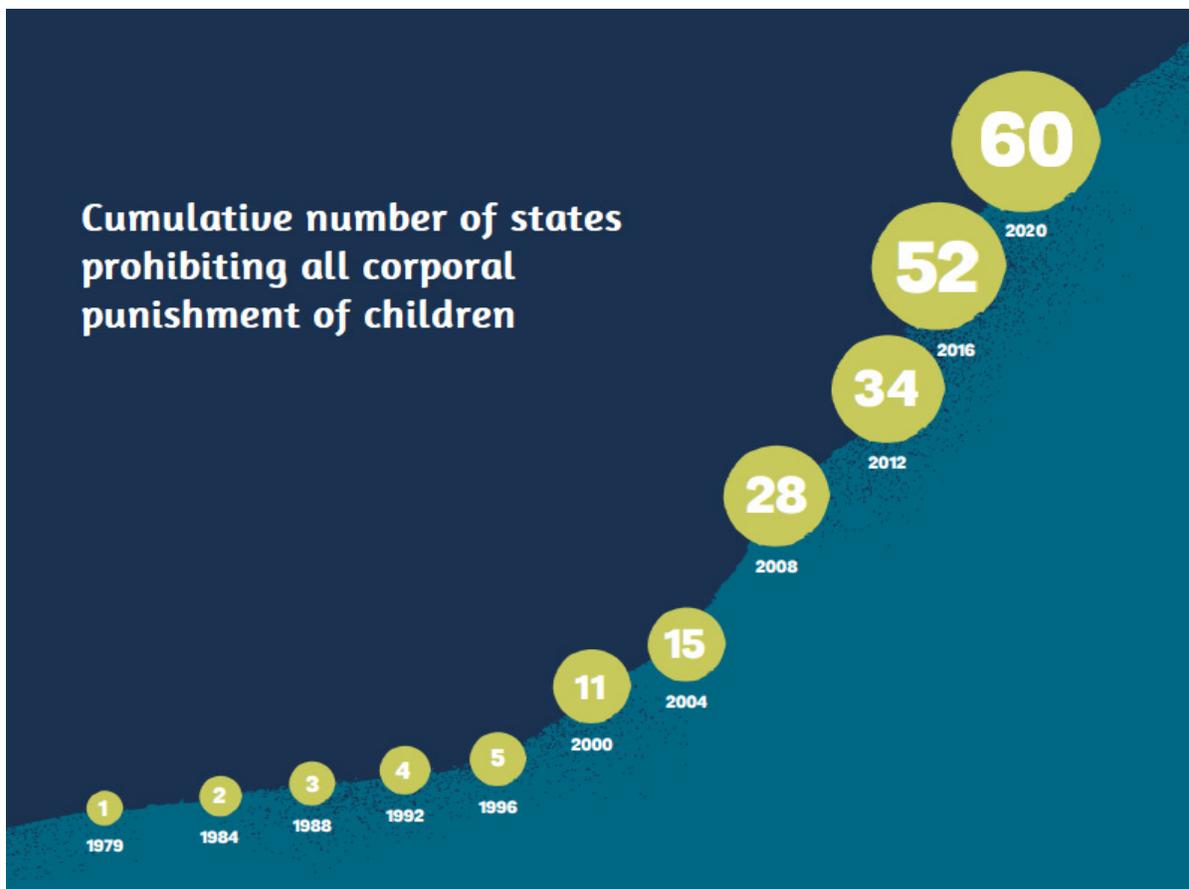
1) 「여행용가방 감금학대 계모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되나」(2020.6.10.자 연합뉴스 기사); 「창녕 학대 아동 "위탁가정에 갈래요"…학대 도구 발견」(2020.6.11.자 SBS 뉴스);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 "사랑의 매 권리 없다"」(2020.6.11.자 TV 조선 기사)  
2) 일본은 2019년 6월 세계에서 59번째로 친권자 등에 의한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호발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sup>4)</sup>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비준하고 있다.

아동복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나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체벌은 아이들의 행동 교정에 장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체벌을 받는 아이는 공포에 복종하는 것이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5)</sup>

이하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용인해 왔던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던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 개정 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법으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



출처: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3) 아동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각각 작성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9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다. 한국 유니세프 홈페이지 참조(<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

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이은주,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중앙일보 2020.7.8.자 「칼럼」); “체벌…한 대는 ‘사랑의 매’고, 세대는 학대입니까?”(조선일보 2020.6.20.자 「주말의 리포트」).

## II.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현황

### 1.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지속적인 체벌을 받은 아동들이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반사회성과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1) 신체적 피해

체벌로 인하여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이 죽음에 이르고 그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동은 상해를 입고 신체적 장애를 겪기도 한다. 대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아동이 훈육(discipline) 또는 교정(correction)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실제로 피해 아동들은 체벌로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일관되게 답하고 있다고 한다.<sup>6)</sup>

문제는 대부분의 아동 학대(child abuse)가 체벌, 즉 자녀를 통제하고 벌주기 위한 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주요한 캐나다 연구에서도 신체적 학대사건의 약 3/4 정도(74%)가 체벌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정서적 학대 사건으로 판명된 사건의 27%가 일종의 벌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살해사건의 발단에는 징계나 벌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sup>7)</sup> 따라서 ‘체벌’과 ‘학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벌을 근절함으로써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sup>8)</sup>

더 나아가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아무리 약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경미한 정도의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체벌이 단계적 확대(escalation)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점이다. 체벌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벌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벌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체벌의 확대 위험성은 때로는 부모의 개인적 감정(예를 들어, 화,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아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 (2) 반사회적 행동 성향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체벌이 장기적으로 어른들이 기대했던 행동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없으며, 대신에 따돌림(왕따), 거짓말, 부정행위, 가출, 무단결석, 학내 비행행위 및 청소년

6)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learning from states which have achieved law reform", Briefing prepared by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May 2014, p.11.(available at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7) Ibid., pp.11-12.

8)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1983년 체벌을 전면금지한 후 아동이 살해되는 건수가 체벌 감소 건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bid., p.12.

년기에 범죄행위 가담 등 비행행위와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다시 말해, 체벌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적 효과도 없고, 오히려 다음에 들키지 않으려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 (3) 공격적 성향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벌이 아동의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공격적 성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고 폭력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라고 한다. 2014년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1세, 3세, 5세 및 9세 어린이 총 1,874명을 상대로 체벌과 아동의 공격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조사에서 “엉덩이를 맞았던 (spanked)” 아동들이 더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으며 2-4년 후에 규칙을 잘 지키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체벌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vicious cycle)’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sup>10)</sup>

### (4) 성인 범죄에 영향

체벌의 영향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다음 세대에까지 미칠 수 있다. 어렸을 때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엉덩이를 때리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1)</sup>

### (5) 정신적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준다고 한다. 체벌은 두려움, 불안장애, 파괴적 행동장애(disruptive disorder), 우울, 절망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피해를 준다. 또한 체벌은 아동의 자존감(self-esteem)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 (6) 교육에 미치는 영향

체벌은 아동의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치원 때 매를 맞았던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 수학성적을 낮게 받았다거나 5세 때 아버지로부터 정기적으로 매를 맞았던 아동은 9세 때 어휘 시험에서 저조한 점수를 얻게 되었다는 결과, 그리고 매

9) Ibid., p.14.

10) Ibid., pp.18-19.

11) Ibid., pp.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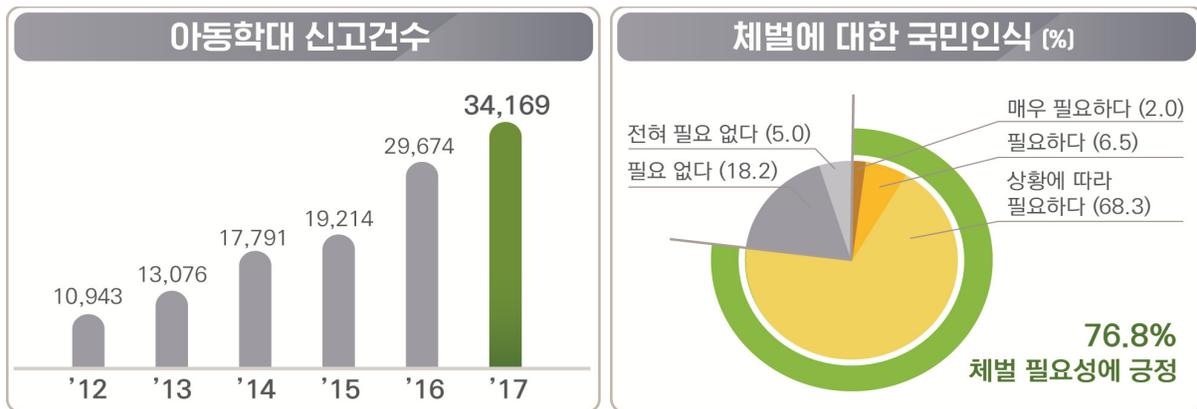
를 더 많이 맞은 아동일수록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더 과잉활동성을 보인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체벌과 인지능력 훼손과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에 의한 체벌은 아동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교 출석과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독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9학년 4만 5천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심각하게 매를 맞았던 적이 있는 학생은 체벌은 받은 적은 없던 학생보다 학교를 결석하는 비율이 10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체벌이 아동의 인지발달과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성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대에 체벌을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대학 졸업률이 하락하며, 직업 및 소득 분포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도 낮게 나왔다고 한다.<sup>12)</sup>

## 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체벌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아동기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체벌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출처 :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근본적으로 체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체벌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학대 건수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추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해 “법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유사행위를 멈추게 될 것이다.

12) Ibid., pp.26-27.

### 3. 관련 국내법과 현행 「민법」 규정의 문제점

2015년 3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3259호, 시행 2015.9.28.)<sup>13)</sup>을 통해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이 포함되는지 그 한계가 모호하고,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sup>14)</sup>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을 제시하였는데,<sup>15)</sup>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인권 및 참여권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가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sup>16)</sup>

## III. 비교법적 검토

### 1. 독일

#### (1) 관련 규정

독일은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와 관련하여 원래 「민법전」 제1631조에 체벌에 대한 권리를 부(父)에게 인정하고 있었고 성평등을 이유로 그 이후에 모(母)에게도 인정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1992년에 비로서 이 규정은 무효가 되었다.

2000년에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chtung der Gewalt in der Erziehung)이 통과되면서 아동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 편에서 체벌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 현행 민법전과 같이 “체벌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 및 그 밖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게 되었다(민법전 제1631조 제2항).<sup>17)</sup> 이렇게 법률을 개정할 취지는 폭력(체벌)이 훈육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태도나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sup>18)</sup>

13)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합동, 2019.5.23.), 23쪽

15)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16) 「포용국가 아동정책」 참조

17) Sabine Behn/Kari-Maria Karliczek, “Corporal punishment –Legal situation and prevalence in Germany–”, pp. 2-3. 해당 내용은 부모의 범죄화 없이 훈육 시 폭력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형법이 아닌 민법전의 일부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18) BT-Drucksache 14/1247, p.2, 5ff.

「양육시 폭력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회법전」에서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가정 내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관계 당국은 부모, 그 밖의 양육권자에게는 가정에서의 갈등상황을 폭력에 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법전 제16조).

독일의 법률 개정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아동은 비폭력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훈육의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아동의 기본권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법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둘째, 체벌 금지와 연계하여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계 당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원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훈육의 목적으로 사용된 신체적 폭력이 독일 형법전 제223조(상해) 또는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법전 제1666조<sup>19)</sup>에 따라 가정법원이 개입하거나 형사소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나 국가개입을 가급적 삼가도록 하였다.

## (2) 체벌 금지 법정화 이후 인식 변화

2011년 9,500명의 16-40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2%가 어린 시절에 체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6%였던 1992년의 비슷한 연구 이후 두 배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63%가 체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 ‘경미한(light)’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1992년 58%에서 2011년 36%로 크게 줄었다.<sup>20)</sup>

2007년에 수행된 연구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조사했다. 체벌에 대한 그들의 사용과 태도, 폭력의 경험, 법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대해 5천 명의 부모들(각국마다 1,000명씩)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독일 부모 중 28%는 ‘체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88%는 ‘가능한 한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87%는 ‘비폭력적 자녀양육이 이상적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sup>21)</sup>

19) 제1666조 자녀복지가 위협받을 시 취하는 법원 조치

(1)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비롯해 자녀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고 부모가 이러한 위험을 없애려고 하지 않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전술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 Pfeiffer, C. (2012), "Weniger Hiebe, mehr Liebe. Der Wandel familiärer Erziehung in Deutschland", Centaur, 11(2), pp.14-17.

21) Bussmann, K. D. (2009), The Effect of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n Europe: A Five-Nation Comparison,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 2. 일본

2019년 6월 일본은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sup>22)</sup>(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한다)이 개정하면서 친권자 등에 의한 체벌 금지를 법정화하였고,<sup>23)</sup> 체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어왔던 민법상의 '징계권' 규정(제822조)<sup>24)</sup>을 이 법 시행 후 2년을 목표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sup>25)</sup>

친권자 등의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가이드라인인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하여~모두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로~」(이하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2020년 2월 20일에 후생노동성이 공표하였다.<sup>26)</sup>

### (1) 법률 개정 경과<sup>27)</sup>

일본도 아동상담소에 대한 아동학대 상담대응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중에는 보호자가 ‘훈육’이라고 명목으로 폭력·학대를 자행해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훈육을 위해 자녀를 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그와 같은 훈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체벌이 점차 심해지고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보였다. 이에 1990년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일본도 1994년에 비준하고 이 조약에 근거해 설치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1998년부터 수회에 걸쳐 체벌금지의 법제화와 함께 계발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6월 통과된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법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화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의 권리가 지켜지는 체벌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바꾸어 가는 것과 동시에, 자녀 양육 중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가 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2) 법 개정의 의의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체벌금지는 부모가 통증이나 고통을 이용해 자녀의 언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육아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벌금지에 관한 사고방식을 보급하고,

22)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八十二号) 令和元年六月二十六日公布(令和元年法律第四十六号) 改正.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3) 아동학대방지법 제14조제1항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아동 훈육시 체벌을 가하는 행위, 그 밖의 민법(1907년 법률 제89호) 제820조의 규정에 따른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해당 아동을 징계해서는 아니 된다.

24) 제822조 (징계)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제820조의 규정에 따른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25) 「親の体罰禁止, 20年4月から 改正虐待防止法が成立」(2019.6.19. 日本経済新聞). 일본은 아직도 체벌을 용인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공익사단법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2017년에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을 용인하는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0%에 이른다는 결과가 있다.

26) 「体罰等によらない子育てのために」~みんなで育児を支える社会に~(厚生労働省 「体罰等によらない子育ての推進に関する検討会」, 2020.2.)(<https://www.mhlw.go.jp/content/11920000/minnadekosodate.pdf>).

27)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3, 11쪽.

사회 전체에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육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보호자가 육아로 고민할 때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sup>28)</sup>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어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육아 중 보호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배경으로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체벌이 이용되고 있다.

**【자녀의 연령이나 특성 등에 관련되는 일】**

- 매우 열심히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 말로 몇 번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 연령에 따른 발달·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보호자의 걱정이나 부담감, 고독감 등에 관련되는 일】**

- 자신의 일이나 간병, 가족관계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
- 주위에 상담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아동이 여러 명 있지만 주위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호자의 지금까지의 체험이나 주위의 언동 등에 관련되는 일】**

- 나 자신도 그렇게 지내며 자라왔다
- 어른으로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 애정이 있으면 때려도 이해해 준다고 말해왔다.
-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가 만만해서라고 비난받았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에 의해서 체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벌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한 접근방법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부모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오는 안심감이나 신뢰감, 따뜻한 관계가 기분 좋은 것은 어린아이(자녀)도 어른과 같다.

#### (1) 자녀와의 관계

##### ① 자녀의 심정이나 생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대에게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체험에 의해서 자녀는 마음이 안정되거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우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의견은 달라도 서로의 마음이나 그 후 의사소통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며, 자녀에게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8)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12-15쪽.

② 말을 안 듣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호자의 관심을 끌고 싶거나, 아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컨디션이 나쁘다 등 다양하다. ‘하고 싶지 않음’은 아이의 마음이며,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보호자의 대응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서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③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녀가 신변을 볼 수 있도록 보호자가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아이의 연령이나 성장·발달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어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 보일 수도 있다. 각자 아이에 따라 성장과 발달 상황에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편차로 인해 아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④ 자녀의 상황에 따라 주변 환경을 조성해 본다.

유아의 경우에는 위험한 것에 닿지 않게 하려고 “만지면 안 돼!”라고 꾸짖지 말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유의하며, 아이에게 만지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이나 닿지 않는 곳에 두는 등 환경을 바꾸어 짜증이 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한다.

⑤ 주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녀의 사기에 영향을 미쳐본다.

자녀는 즉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다려 준다면 자녀의 기분이나 행동이 변화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렵다면, 장면을 전환하는 것(예를 들어, 집에서 나와 산책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제에 임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나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것 등 자녀의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식해 본다.

⑥ 긍정문으로 알기 쉽고, 때로는 다 함께, 본보기로

자녀에게 의사를 전할 때에는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걸어 줘” 등 긍정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화하고 보다 가까이 가서, 차분한 목소리로 전하면, 자녀에게 쉽게 전달된다.

또한 자녀들은 어른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므로, “다 같이 장난감을 치우자”라며 함께 진행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하거나 가르칠 수도 있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에 갈 때에는

작은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라는 인사도 어른이 평소에 의식하는 것으로 자녀도 자연스럽게 배워가기 쉬워진다.

⑦ 좋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자녀의 좋은 태도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은 자녀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것도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두를 가지런히 벗고 있구나” 등 긍정적인 주목을 받는 것으로 그 태도나 행동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과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의 태도나 행동을 칭찬할 때에는 무엇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자녀에게 보다 잘 전해지고, 바로 칭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자기 전 등 침착한 시간대에 해도 좋다.

(2) 보호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

육아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또 육아 이외의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한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에 우선 그러한 기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가 원인된 것인지, 자신의 컨디션 난조나 고독감 등 자기 자신의 일과 관계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기분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자녀의 원인보다 자신의 상황(예를 들어, 시간이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등)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심호흡을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천천히 5초를 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어 기분전환을 하는 등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때로는 보호자 자신이 휴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와 관계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도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위의 힘을 빌리면 해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육아상담창구나 보건센터, NPO, 기업 등의 다양한 지원(가사지원, 가사대행 서비스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용기를 가지고 지원요청을 함으로써 아직 모르는 지원이나 서비스를 접하거나 그로 인한 피로나 초조함이 경감될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예시〉

■ 나갈 시간이 되어도 준비(준비)를 하지 않음  
 “나갈 시간이네, 이제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입으면) “스스로 옷 잘 갈아입었네. 그럼 다음에는 가방을 가져 오렴” 「준비」라고 일괄적으로 말을 걸어 버리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할 일을 구분하고, 하기 쉬운 것부터 구체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 또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여 그것을 전하는(가능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갈아입었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 것도 효과적이다.

<p>■ 앉고 싶다고 할 때에 앉혀 주지 않음                  “마루냐, 이 의자냐, 어딘가에 앉으렴”                  자녀에게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시만 받으면 반발하고 싶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다는 자아가 싹트는 유아기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p>
<p>■ 잘 물건을 잃어버림                  “잃어버리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한 소지품은 “현관의 한가운데에 눈에 띄는 데에 놓아 둔다”, “소지품 리스트를 만들어 가시화한다” 등의 방안이 있다.</p>

### 3. 뉴질랜드

#### (1) 관련 규정

뉴질랜드에서는 호주<sup>29)</sup>와 달리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sup>30)</sup> 다만 2007년 개정 형법(the Crimes Amendment Act 2007)에서는 아동의 부모와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된 유형력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며(상당한 이유가 있고), (i)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위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ii) 해당 아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ii) 해당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v) 바람직한 돌봄 및 양육에 부수하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 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9조제1항).<sup>31)</sup>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목적으로(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하며(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제2항)이 예외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허용하는 조항(제1항)보다 우월하다고 한다(제3항).

#### (2) 체벌 금지 법정화 이후 인식 변화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에게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는 비율이 1981년에 90% 이상, 2008년에 58%, 2013년에 40%로 급감하고 있으며, 2013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대다수(93%)가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2007년 법 개정 사

29) 호주에서는 부모와 후견인이 아동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이 합법이다. 「Why is it still legal for adults to hit children as punishment?」(ABC News, 18 Apr 2019).

30) 뉴질랜드 형법(「Crimes Act 1961」) 제59조

3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문언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아동에 상해의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부모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해당 아동의 머리 또는 목에 가해지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하여 해당 아동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신체의 일부에 가해지는 경우에는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001년 개정 형법(제89호) 제61AA조제2항).

실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한다.<sup>32)</sup> 또 다른 조사에서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체벌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 비율이 2008년 62%에서 35%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한다.<sup>33)</sup>

그리고 2012년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동에 대한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2007년 법 개정 이후 44%가 자녀를 때리지 않았으며(not smacked), 29%는 거의 때리지 않았다고(rarely), 21%는 가끔(occasionally), 1%는 자주(frequently) 때렸다고 답하였다고 한다.<sup>34)</sup>

#### 4. 소결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는 해당 자녀의 부모나 그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체벌은 아이들의 행동 교정에 장기적인 효과가 없으며, 자녀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벌 금지를 입법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벌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체벌 없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체벌 금지를 법정화한 스웨덴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전체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체벌에 의하지 않는 육아를 추진해 나갔다. 작년에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을 통해 체벌 금지를 법정화한 일본 역시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아닌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그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족이나 지역 주민, NPO, 보육 등의 육아 지원자, 보건·의료·복지·교육 현장 등에서 양육 중인 보호자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은 육아 중인 보호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보호자만 육아 부담을 맡지 않도록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과도 연계하여 사회 전체가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1. 사회전체의 인식 전환이 우선

부모의 자녀 체벌 근절을 위한 민법 등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잠재적 위험 가정에 있는 아동이나 실제 학

32) D'Souza, A. J., et al (2016), "Attitudes to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are changing", Archives of Diseases in Childhood, published online on 10 May 2016 as 10.1136/archdischild-2015-310119.

33) Wood, B. (2013),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in New Zealand – six years after law reform, EPOCH New Zealand.

34) Reported in New Zealand Herald, 2 April 2012, www.nzherald.co.nz.

대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법 집행(적용)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에 금지 규정을 두어야 ‘체벌’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정화하였으나,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국민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76.8%)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아동학대치사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자 부모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거나 피해 아동이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항변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도 본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싶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에서는 형사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훈육을 위한 체벌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확대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때’를 훈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사에 국가의 개입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민법 상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로서 훈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그 동안 거의 인정받지 못해왔던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아동에게 인정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입법 방향

구체적인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시 부모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과, 체벌을 원칙적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과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나에 대한 논란, 즉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21대 국회(2020.7.21.기준)에 발의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기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100381)과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0427)<sup>35)</sup>이 후자에 해당하는

35) ※ 법률안 비교

현 행	전용기의원안	황보승희의원안
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教養할 權利義務가 있다. <단서 신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 -- 권리의무가 있으며, 자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 ---. 다

다고 볼 수 있다. 두 개정안은 입법취지로 볼 때 친권자의 정당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범위 내에 속하는 훈육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체벌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문언이 들어가 있다. 물론 일본이 2019년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어디까지가 ‘필요한 훈육’이고 어떤 경우가 ‘체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 「체벌 등에 의하지 않는 양육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 “체벌 등에 의하지 않은 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중

## II. 훈육과 체벌은 어떻게 다른가

### ① 훈육과 체벌과의 관계<sup>36)</sup>

부모에게 자녀의 이익을 위해 감호·교육을 할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훈육을 하지만, ‘이상적인 아이로 키우자’, ‘장래에 곤란하지 않도록 잘 길러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지’ 등과 같은 생각에서 때로는 훈육으로 자녀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부모가 훈육을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신체에 어떠한 고통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행위(벌)인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체벌에 해당하여 법률로 금지된다. 이것은 부모를 벌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육아를 사회 전체에서 응원·지원하여 체벌에 의하지 않는 육아를 사회 전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훈육(しつけ)”이란, 자녀의 인격이나 재능 등을 신장하여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

현 행	전용기의원안	황보승희의원안
第914條(居所指定權) 子は 親權者의 指定한 場所에 居住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만, 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教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삭 제>	第914條(居所指定權) -- 친권자가 ----- ----. 다만, 친권자는 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지원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와 마주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자녀에게 훈육을 할 때에는 자녀가 발달해 가는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체벌로 억누르는 훈육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말이나 견본을 제시하는 등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말로 3번 주의를 주었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뺨을 때렸다.
  - 소중한 물건에 장난을 쳤기 때문에 장시간 정좌를 시켰다.
  -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므로, 똑같이 아이를 때렸다.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엉덩이를 때렸다.
  - 숙제를 하지 않아서 저녁을 주지 않았다.
  - 청소를 하지 않아서 걸레를 얼굴에 밀었다.
- ☞ 이들 행동은 모두 체벌에 해당한다.

다만, 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예를 들어, 길에 뛰쳐나갈 것 같은 아동의 손을 잡는 등)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지하는 행위(예를 들어,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등은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부모 이외의 양육·교육을 할 권리가 없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체벌 이외의 폭언 등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sup>37)</sup>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져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밖에 현저하게 감호를 게을리 하거나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한 폭언이나 현저하게 거절적인 대응을 하는 것(심리적 학대) 등에 대해서도 학대로서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호통을 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을 폄훼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놀림감이 되게 하는 언행은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농담으로 여기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등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 의욕을 보인다는 구실로 형제(친구)와 비교하여 폄하했다.
-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36) 앞의 후생노동성 보고서, 5-6쪽.

그리고 민법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100344)<sup>38)</sup>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당 규정의 삭제 취지가 제대로 알려진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규정의 삭제를 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해 부모(또는 잠재적 가해 부모)에 대하여 “법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체벌 한계를 넘어 학대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부모(잠재적 위험 부모)나 체벌과 학대행위 경계에 있는 위험 부모들에게 본인의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의원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1269)<sup>39)</sup>과 같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되 친권자의 권리·의무 규정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7) 앞의 후생노동성 보고서, 6쪽.

38) ※ 개정법률안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 그子を 保護 또는 教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삭 제〉

39) ※ 개정법률안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생 략)</p> <p>〈신 설〉</p> <p>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 그子を 保護 또는 教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p> <p>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p>	<p>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지정이나----- ----- ----- ----- ----- ----- ----- ----- ----- -----</p>

〈참고1〉 관련 입법례 원문 및 번역문

■ 독일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원문과 번역문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민법전」
<p>Buch 4 Familienrecht</p> <p>§ 1631 Inhalt und Grenzen der Personensorge                      (1) Die Personensorge umfasst insbesondere die Pflicht und das Recht, das Kind zu pflegen, zu erziehen, zu beaufsichtigen und seinen Aufenthalt zu bestimmen.                      (2) Kinder haben ein Recht auf gewaltfreie Erziehung. Körperliche Bestrafungen, seelische Verletzungen und andere entwürdigende Maßnahmen sind unzulässig.                      (3) Das Familiengericht hat die Eltern auf Antrag bei der Ausübung der Personensorge in geeigneten Fällen zu unterstützen.</p>	<p>제4편 가족법</p> <p>제1631조 (신상관리감독의 주요 내용 및 제한)                      (1) 신상관리감독에는 특히 자녀를 보살피고, 교육하고, 관리 및 감독하고, 자녀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관리 및 의무를 포함한다.                      (2)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체벌을 비롯해 심리적 상처 및 기타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가정법원은 특정 사항에 대해 신상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모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p>
「Sozialgesetzbuch」	「사회법전」
<p>Achtes Buch Kinder- und Jugendhilfe</p> <p>§ 16 SGB VIII Allgemeine 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                      (1) Müttern, Vätern, anderen Erziehungsberechtigten und jungen Menschen sollen Leistungen der allgemeinen 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 angeboten werden. Sie sollen dazu beitragen, dass Mütter, Väter und andere Erziehungsberechtigte ihre Erziehungsverantwortung besser wahrnehmen können. Sie sollen auch Wege aufzeigen, wie Konfliktsituationen in der Familie gewaltfrei gelöst werden können.                      (...)</p>	<p>제8편 아동 및 청소년지원</p> <p>제16조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                      (1) 부모, 그 밖의 양육권자 및 젊은이에게는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의 급부가 제공되어야 한다. 급부는 부모, 그 밖의 양육권자가 그들의 양육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 급부는 또한 가정에서의 갈등상황을 폭력에 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p>

■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원문과 번역문

<p>「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令和元年6月26日 法律 第46号 施行日：令和二年四月一日</p>	<p>「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6월 26일 법률 제46호 시행일：2020년 4월 1일</p>
<p>第十四条(親権の行使に関する配慮等) 児童の親権を行う者は、児童のしつけに際して、体罰を加えることその他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 第八百二十条の規定による監護及び教育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行為により当該児童を懲戒してはならず、当該児童の親権の適切な行使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児童の親権を行う者は、児童虐待に係る暴行罪、傷害罪その他の犯罪について、当該児童の親権を行う者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その責めを免れることはない。</p>	<p><b>제14조(친권의 행사와 관련된 배려등)</b></p> <p>①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아동을 훈육할 때에 체벌을 가하는 것 그 밖에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820조의 규정에 따른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해당 아동을 징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아동의 친권의 적절한 행사를 배려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아동학대에 관한 폭행죄, 상해죄,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임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p>

■ 뉴질랜드 「형법」의 원문과 번역문

<p>「Crimes Act 1961」</p>	<p>「형법」</p>
<p><b>59 Parental control</b></p> <p>(1) Every parent of a child and every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the child is justified in using force if the force used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nd is for the purpose of—</p> <p>(a) preventing or minimising harm to the child or another person; or</p> <p>(b)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conduct that amounts to a criminal offence; or</p> <p>(c)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offensive or disruptive behaviour; or</p> <p>(d) performing the normal daily tasks that are incidental to good care and parenting.</p> <p>(2) Nothing in subsection (1) or in any rule of common law justifies the u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p> <p>(3) Subsection (2) prevails over subsection (1).</p> <p>(4) To avoid doubt, it is affirmed that the Police have the discretion not to prosecute complaints against a parent of a child or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a child in relation to an offence involv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 child, where the offence is considered to be so inconsequential that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proceeding with a prosecution.</p>	<p><b>제59조 부모의 통제</b></p> <p>(1) 아동의 부모와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된 유형력이 해당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p> <p>(a)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p> <p>(b) 해당 아동이 범죄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p> <p>(c) 해당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p> <p>(d) 돌봄 및 양육에 부수하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p> <p>(2) 제1항의 규정 또는 커먼로 규정 중 어느 것도 교정의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p> <p>(3) 제2항은 제1항에 우선한다.</p> <p>(4) 자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범죄와 관련되어 행해진 자녀의 부모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 해당 범죄가 매우 사소하여 기소하는 것에 아무런 공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게 이를 기소하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음을,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확인한다.</p>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토론 1

# 훈육과 체벌, 학대의 경계: 정신의학적 관점

김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 훈육과 체벌, 학대의 경계: 정신의학적 관점

김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부모로서 아이를 체벌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목적으로 체벌하게 된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체벌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훈육과 체벌 학대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8년에 미국소아청소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효과적인 훈육 지침’[1]을 제안한 이래로 20년만에 그동안의 새로운 연구 결과와 최신 지견을 종합하여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훈육 (Effective discipline to raise healthy)’이라는 정책 성명서(policy statement)를 2018년에 내놓았다[2].

2018년의 정책 성명서에는 체벌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 수가 작지만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이기에 인용한다.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심한 체벌을 받아온 18-25 세 사이의 성인 23 명과 정상 대조군 22명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뇌 구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3]. 심한 체벌은 12세 이전에 시작되어 최소한 3년 이상, 1년에 12회 이상 체벌이 있었던 경우로 정의했다. 심한 체벌을 받은 집단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전전두엽의 여러 영역에서 회백질(gray matter)의 부피가 감소되었고 이는 인지 기능(IQ)의 저하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체벌이 뇌와 인지 기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2014년에 출판된 한 연구에서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4]. 총 33 가족을 녹음했는데 이중 반수 정도인 15 가족에서 아이를 체벌했다. 대부분의 부모가 말로 훈육한 후 평균 30 초 지나서 체벌했다. 이는 체벌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부모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에 불과함을 뜻한다. 체벌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3분의 2 이상의 아동이 체벌 후 10분 이내에 문제가 되었던 행동을 다시 보였다. 즉 체벌은 문제 행동의 즉각적인 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16년에 출판된 한 메타분석 연구에는 160,92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체벌은 행동 수정의 효과가 없고 체벌을 받은 아이가 이후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을 보일 위험이 높음을 확인했다[5]. 이 연구가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문제 행동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를 확립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체벌의 후유증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을 한다는 자체가 연구 방법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1998년 이후 20여년 간 축적된 부모의 체벌 관련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18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는 체벌이 신체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반복된 체벌은 아동의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 아동기의 도덕관념 내재화와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체벌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반항과 공격 행동, 알코올과 약물 남용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인지 발달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
- 체벌의 해로운 영향은 학대로 인한 영향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중 마지막 문장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체벌과 학대는 동일한 수준으로 아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체벌과 학대를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한 정상 가족[6]’에서 김희경이 썼듯이 사람들은 소위 정상 가족에서 허용하는 체벌과 비정상 가족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서로 다르다고,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족주의 사회의 특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특히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기에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높다.

체벌은 아이에게 책임감과 자기 조절 능력을 학습시키는 대신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공격성과 분노를 유발하는 데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절제된 형태로 체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학대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체벌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으로 체벌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로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다면 타임 아웃(time out) 과 같은 행동 수정 기법과 긍정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이용한 양육 기술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어야 하겠다.

## 결론

1. 체벌은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반항과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도덕관념의 내재화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모호하며 체벌의 해로운 영향은 학대로 인한 영향과 같다.
3. 아이의 훈육을 위해 부모는 타임아웃과 긍정 강화를 이용한 양육 기술을 배워야 한다.

## 참고문헌

- [1]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Guidance for effective discipline. *Pediatrics* 1998;101(4):723-728.
- [2] Sege RD, Siegel BS, AAP council on child abuse and neglect, AAP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Effective discipline to raise healthy children. *Pediatrics* 2018;142(6):e20183112
- [3] Tomoda A, Suzuki H, Rabi K, Sheu YS, Polcari A, Teicher MH. Reduced prefrontal gray matter volume in young adults exposed to harsh corporal punishment. *Neuroimage* 2009;47(suppl 2): T66-T71.
- [4] Holden GW, Williamson PA, Holland GW. Eavesdropping in the family: a pilot investiga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J Fam Psychol* 2014;28(3):401-406.
- [5] Gershoff ET, Grogan-Kaylor A. Spanking and child outcomes: old controversies and new meta-analyses. *J Fam Psychol* 2016;30(4): 453-469.
- [6] 김희경. 이상한 정상 가족. 동아시아 2017.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토론 2

# “훈육”을 남기면 누구의 핑계로 쓰일까?

이 윤 경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



## “훈육”을 남기면 누구의 핑계로 쓰일까?

이윤경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이하 EXIT)는 버스와 함께 거리아웃리치를 하며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난다.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처한 혹은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넘어서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 갈등으로 인한 “가출”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이다

EXIT에서는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담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버스와 엑시트의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EXIT가 청소년들의 겪어온 삶에 대해 듣는 방법은 청소년들이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다. EXIT가 만나는 청소년들의 다수는 양육자가 있는 ‘원가정’을 나온 경험이 있거나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수는 ‘학대’의 경험이 있다. 매년 국가가 조사하는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는 ‘가족과의 갈등’이다.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설문지의 보기가 잘못됐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린이/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며 오히려 숨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는 상황을, 직장에서 노동자가 괴롭힘 당하는 상황, 여성이 남성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상황을 “갈등”이라 부르지 않는다. 폭력이다. 상대가 처한 사회적 취약성을 알기에 행할 수 있는 질 나쁜 폭력이다. 어린이/청소년이 당하는 폭력 역시 그러하다.

EXIT가 만나는 청소년들 다수는 양육자에게 맞거나, 가스라이팅(심리지배) 당하거나, 감금당하거나, 학대 수준의 방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자원을 갖지도, 사회적 보호체계가 작동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그저 살기 위해 양육자와 원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이들이다. “가출”이라는 단어는 “철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집 고마운 줄 모르는, 사춘기 방황” 등의 사회적 이미지가 덧 씌워져있다. 적어도 EXIT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가출”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원가정을 “탈출”한 이들이었다. 그렇게 원가정을 탈출해서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을 사회는 보호하지 못해왔다. 오히려 수많은 인권법들에서 삭제할 것을 강조하고 양육자들의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데 이용되는, 민법 915조 “징계권”을 “훈육”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 강정은 변호사의 발제문에

서 (3. 체벌 관련 판례의 검토) 보듯, ‘필요한 훈육’에 대한 권리가 현재 민법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미 아동학대 관련 판결 시 법리 해석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필요한 훈육”은 “징계권”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의자의 감형 혹은 무죄의 근거 조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훈육”을 남기면 누구의 핑계로 사용될 것인가?

## 죽을 것 같아도 신고하지 못한다

EXIT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학대 경험을 나눠주면 가능한 경찰신고 여부를 물어본다. 학대 피해자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된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에 아홉은 신고조차 해본 적이 없다. 누가 들어도 심각한 폭력을 당했지만 신고는 한 적이 없다.

“그래도 아빠, 엄마를 어떻게 신고해...” “엄마, 아빠도 힘들어서 그래. 난 이해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다.

### (학대 사례 1)

A가 태어나고 친모는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감. A가 4세경 친부가 A를 종교시설에 맡겼고, 10대 초반까지 그곳에서 지냄. 이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종교시설에 맡겨지기 전 친부와 친부의 친척들에 의한 괴롭힘이 심했다 함. 10대 초반 친모가 찾아와 데려감. 친모와 함께 산지 얼마 안 되어서 학대가 시작됨. 20대 초반까지 매일 맞았고, 친모가 목을 졸라 기절한 적도 있음. 그렇게 때린 뒤에는 약을 발라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함. 친모를 신고한 적은 없음. 친모가 친부에게 당했던 폭력 때문에 친모도 정신적으로 힘들 거라고 이해함. 10대 후반 친모와 함께 유럽 국가로 이주함. 그곳에서도 학대는 이어졌고, 신고하면 친모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음. 돈을 모아 친모에게서 도망쳐 한국으로 옴. 연락이 닿는 친인척이 없고, 지원 기관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해본 적은 없음.

### (학대 사례 2)

B의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각자 재혼을 함. 10대 초반 친모와 함께 살았는데 계부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하거나 “너만 보면 화가 난다”며 집을 나가라는 말을 자주 들음. 친모는 말리지 않았고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B를 닦았음. 친모집에 살기가 어려워 친부의 집으로 감. 친부와 계모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 B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음. 친부집 역시 살기가 어렵고 눈치가 보여 외할머니 집으로 감. 이후 계부와 친모가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B 데리고 살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고 현재 집을 완전히 나옴. 친부모나 계부모를 신고한 적은 없음. 부모를 신고할 수는 없다고 함. 현재 10대 중반임.

(학대 사례 3)

C는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친부에 의한 언어폭력을 기억하고 있음. “쓸모없는 것,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밥만 축낸다” 등. 친모는 C에 대한 친부의 언행을 막지 않고 못본 척 해왔음. C의 남자 형제는 화가 나면 자주 C를 심하게 폭행했으나 집안 식구 누구도 말리지 않음. 심하게 맞을 때 집을 나와 쉼터 등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불안감이 심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

세 가지 사례는 특별하지 않은 사례다. 몇 가지 상황만 다를 뿐 폭력을 당하는 정황과 정도, 가해자들의 태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비슷하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10대 청소년들이지만 가족이니까 신고하지 못한다. 가족을 신고할 마음을 먹어도 신고하지 못한다.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수가 여전히 맞고 있고, 신고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같이 대응하겠다고 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EXIT는 청소년과 함께 학대 신고를 해본 적이 없다.

“훈육”을 남겨놓으려는 입안자들의 논리를 굳이 추측해야 한다면, 양육자가 자녀를 잘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을 자녀가 “철없이” 신고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선의로 생각해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일 것이다. 모든 제도는 일부의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 허점이 사람이 맞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조항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으니 112 신고접수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상황은 오히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누구든 당신을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굴욕적인 대접을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신고하면 당신을 사회가 보호해줄 것임을 알려야 한다. 이 사회가 최소한 때리거나 맞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학대를 조장(助長)한다**

간혹 신고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있다. 신고 진행 과정을 들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여겨진다.

(청소년 이야기 1)

*작년 7월 23일 집에서 나왔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아빠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때렸어요. 저희 아빠 되게 야박해요. 그런 걸 알아요. 어디를 때리면 안 걸리는지. (중략)*

*아빠한테 맞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이라며 불처벌명령을 내렸어요. 8월 27일이었어요. 그 경찰은 그 전에 다른 일로 아빠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본 아*

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폭력이라고 했어요.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이 가잖아요. 아보전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랑 경찰서에 동행한 게 아니라, 편한 장소라며 데려가서는 얘기 나눈 후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사 준 거 다 두고 나가라고 해서 정말 전부 다 두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보전한테 아무런 연락이 안 왔어요.

경찰이 쉼터에 연결해 줘서 쉼터에 갔는데 1주일도 안 돼서 나왔어요. 학교도 자퇴하고. 또 다른 쉼터에 갔을 때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아보전에 연락해 달라고 해서 그 쉼터에서 다시 아보전 사람과 상담했어요. 또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쉼터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보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아보전은 19살 생일이 지나면 관계가 끊겨요. 그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아보전과의 관계는 끊겼어요. 아보전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비마이너, 2019,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 (청소년 이야기 2)

아빠로부터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당하는 저를 아빠는 되레 혐오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네가 왕따여서 그렇다”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았어요.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닥 치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안 보여줬냐”라고 했습니다. 1층에 아빠가 있으면 거의 못 내려갔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아빠가 때리거나 괴롭힐 때 신고하고 싶었는데 보복이 무서웠어요. 경찰이랑 상담했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가족이 깨지는 걸 원하냐”, “신고해도 네가 맞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아빠는) 크게 처벌 받지 않을거야”였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집을 나오기 전에 제일 걱정됐던 건 ‘집을 나가면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여름에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때리려고 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2019년 EXIT 운영보고서 중)

신고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신고 후 경찰에 의한 ‘협박, 회유’ 경험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들어보니 네가 잘못했네, 부모님이 일하고 돈 벌어서 너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거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을 처벌받게 할거냐” 등. 경찰이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근거가 “징계권”이다. 그 경찰은 부모가 “훈육” 차원으로 애들을 혼낸 것이고, 이를 신고한 철없는 애들을 원가정으로 잘 돌려보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어린이/청소년들은 양육자에게 더 심한 폭력을 당하는게 보통이다. 감히 부모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공권력에 의해 차단되는 경험을 한 이들은 다시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다. 학대는 그렇게 감춰진다.

##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도 때리지 말고 맞지 말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친권자의 권리·의무 규정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양의원영의원의 대표발의안에 토론자 역시 동의한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발의안 통과 이전이라도 학대의 유형과 신고방식이 어린이/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매체에 대대적이고 정기적으로 광고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학대가 증명되기 전이라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가 지금보다 확대·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보호체계는 원칙없이 여러 부처로 파편화 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청소년이지만 부처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원과 청소년그룹홈 퇴소자와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쉼터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다르다. 같은 부처인 여성가족부 안에서도 청소년쉼터와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정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들이 어린이/청소년에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듯 보호시설들은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규칙과 함께 수용중심으로 운영되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일상의 권한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에서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 (학대 사례 4)

3세 아동을 학대 수준으로 방임하고 있는 가정을 청소년들이 EXIT에 제보함. 몇 주 간 정황 확인 후 지역 아보전에 신고 상의함. 아보전에서 112에 먼저 신고할 것을 제안함. 이유는 경찰이 거주지 확인 후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이 넘어가고, 이후 아보전에 출동 동행을 요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 함. 부모가 아동만 놔둔 채 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 아보전 말대로 경찰에 신고함. 지구대에서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다며 제보한 청소년들의 연락처를 요구함. 정황을 다시 설명하고 여청계 수사관도 출동했으나 뒤 늦게 온 부모와의 대화에서 수사관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돌아감. 아보전에 연락했으나 아보전은 경찰의 판단이 그렇다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답변함. 해당 아보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아동권리보장원 등이라도 연락하겠다 하니, 해당 아보전과 관할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쪽에서 다시 연락 옴. 해당 아보전에서 사례로 접수하고 가정을 모니터링 하기로 함.

기관이 이 정도로 개입해야 사례관리라도 받을 수 있다. 우는 아이를 몇 대 때린 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한 학대를 조장한다. 사는 게 힘들어 애를 몇 대 때렸지만 잘못했다고 경찰에게, 아보전에 잘 얘기하면 그냥 넘어간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현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면 소용이 없다.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을 탈출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삶은 너무 썩썩하다. 잠은 어디서 자야할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니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 양육자가 아동학대로 처벌이든 교육이든 받지 않으면, 어떤 학대 피해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청소년쉼터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다. 청소년의 거소 지정권은 양육자에게 있고, 입소하려면 쉼터가 가해자인 양육자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보호자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갈 수 없다.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바꾸는 것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신과 약제 처방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서 받지 못한다. 거리 생활 중 타인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하지만 양육자에게 연락이 갈까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 법적 성년이 되어도 자신을 때린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올까 여전히 무서워 국가에 거주지 블라인딩 요청을 하지만 학대가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는 거부한다. “공식적으로” 학대 가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신고하는 것도, 학대신고로 접수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숨겨진 학대가 숨겨진 빙하만큼이나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 여론을 핑계 댈다. “징계권”이 폭력을 합리화 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이 갖가지 자료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징계권”을 “훈육”으로 법조항에 남기려 한다. 2019년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UN아동권리위원회 법무부의 답변은 부끄러운 역사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sup>1)</sup>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침해를 “훈육” 유지의 근거로 두는 것 또한 권리의 잘못된 이해거나 변명이다. 부모의 양육할 권리는 양육자에게만 양육을 맡기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과 양육자 모두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누구도 맞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이들에 대한 양육을 원가정에 거의 전담시킨 현재의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고 있는지 살피는 체계가 필요하고, 양육자들이 어린이/청소년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금처럼 실효성이 미비한 상담과 교육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지원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가정은 구성원의 분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분리되길 요구할 경우 혹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원하는 주거와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포용국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문서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 2019. 9.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 질의와 정부 답변 내용  
 법무부 답변: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의 복리를 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징계권의 용어를 순화하거나 그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 토 론 문













